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웅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94

발의연월일: 2020. 8. 7.

발 의 자:노웅래・김민기・장철민

김홍걸 · 윤재갑 · 양정숙

윤미향 · 양이원영 · 김승남

김수흥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(mSv)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, 라텍스, 베게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.

현행법은 이러한 결함 가공제품의 구체적인 폐기기준이 없고,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 · 폐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·폐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, 수거·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공동으로 수거·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그 절차를 마련하는 등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서 그 사실을 공개하고, 보완·교환·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하도록 하며,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).
- 나. 제조업자의 이행 노력만으로 결함 가공제품의 원활한 수거·폐기 등이 어려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이 협조·지원하도록 함(안 제16조제4항 신설).
- 다. 수거, 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의 경우 원자력안 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, 폐기 등의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, 교환,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, 교환, 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"를 "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"를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
- 2. 가공제품이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
- 3.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

-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.
-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해당 조치에 필요한 협조·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1. 해당 가공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(이하 이 조에서 "동일·유사제품"이라 한다)의 제조·수입·판매 등에 관하여 허가·인증·등록·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, 동일·유사제품의수거·폐기·보완 명령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- 2. 해당 가공제품의 최종 구매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7조의2(수거·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)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에 수거·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·폐기 등의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거 •폐기 등의 조치에 필요한 방사선 측정, 안전지침 제공 등의 기술

지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의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고 제조국가, 제조·판매업체명, 종류·품명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.

제31조제1항 중 "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 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 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

- 1.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2. 제1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- 3.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- 4.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- 5.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함 가공제품 조치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완, 교환,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제조업자에게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했 개 아 제16조(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 제16조(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 치)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| 치) ① -----다음 각 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 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,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 교환, 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,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 교환,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 를 하여야 한다. 를 이행하여야 한다. <신 설> 1.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 2. 가공제품이 제15조제2항 각 <신 설>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<신 설> 3.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 명령 을 받았을 때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 -----그 결과를 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<후단 신설>

<신 설>

한다.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 회는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 다.

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에 필요한 협조·지원을 요청할 수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해당 가공제품과 같거나 유
 사한 종류의 제품(이하 이
 조에서 "동일·유사제품"이
 라 한다)의 제조·수입·판
 매 등에 관하여 허가·인증
 ·등록·신고처리 등의 업무
 를 담당하거나, 동일·유사제
 품의 수거·폐기·보완 명령
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
 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
 치단체
- 2. 해당 가공제품의 최종 구매

<신 설>

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
제17조의2(수거・폐기 등의 책임
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)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에 수거・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함께 해당 가공제품의수거・폐기 등의 조치를 추진할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거·폐기 등의 조치에 필요한 방사선 측정, 안전지침 제공 등의 기술지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.
-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가공제품의 사용증지 를 권고할 수 있고 제조국가,

제31조(과태료) 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조·판매업체명, 종류·품명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.

- 1.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 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 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
- 2. 제1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자
- 3.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아니한 자
- 4.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 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

<신 설>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3. (생략)
- 3의2.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 공개 및 보완, 교환, 수 거,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

3의3. ~ 5. (생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5의2. (생략)
- 6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- 7. ~ 10. (생략)
- ④·⑤ (생 략)

한 자

- 5.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- 2 -----
- 1. ~ 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3의3. ~ 5. (현행과 같음)

- (3) -----
- -----.
- 1. ~ 5의2. (현행과 같음) <u><</u>삭 제>
 - 7. ~ 10. (현행과 같음)
 - ④·⑤ (현행과 같음)